

# 민간대체복무란 무엇입니까?

What is alternative civilian service?



## 민간 대체복무란 무엇인가?

군 복무를 대신하여 개인의 양심과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국가 복무 제도입니다.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시행 중인 제도로서 종교적 이유에 국한하여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, 그 외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민간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.

“징병제 국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야 한다.” - 유엔 인권이사회 24/17 결의, 2013년 10월 8일

## 민간 대체복무의 긍정적 효과

대체복무자들은 보건, 복지, 안전, 교정, 환경, 노동, 행정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 이들 역시 사회의 유용한 자원입니다.

독 일: “대체복무제는 독일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 왔다.”

-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, 2013년 6월 3일

대 만: “이들은 유능한 사회 복무 요원입니다. 이들 덕분에 사회 복무의 질이 향상되었고, 인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나라의 이미지도 개선되었습니다.”

- 대만 대체복무에 대한 개요, 2004년 5월 27일

아르메니아: “여러분은 수당도 얼마 받지 않으면서 나라에 큰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누가 봐도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.”

- 에레반 센가비트 사회 복지회의 감독관

## 민간 대체복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

부작용을 우려할 실제적인 이유는 없습니다.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으며, 대체복무자를 선별하는 심사 제도가 확립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.

### 병역 기피 오용 우려 “없음”

“대만에서도 반대론자들은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, 이는 기우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. 그래서 대체복무 기간을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줄여 나갈 방침이다.” - 첸웨이웬 대만 역정서 청장, 2004년 5월 31일자 한겨레 신문

### 국가 의무의 형평성 손상 우려 “없음”

“국민 개별제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의무 군 복무자와 대체복무자 사이의 불공정한 불균형을 제거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, 실제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.”

-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, 윤여범, 최명진 대 대한민국, 개인청원 1321-1322/2004



## 민간 대체복무의 국제 표준

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.

### “민간” - 순수 민간적 성격

대체복무는 국방부나 병무청과 같은 군과 군 산하 기관의 관여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.

“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.”

-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, 정민규 외 99인 대 대한민국, 개인청원 1642-1741/2007

“대체복무에 대한 모든 통제 및 관할은 민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, 군은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.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, 시행 규칙 및 내부 규정들이 대체복무가 민간 관할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온전히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”

- 베니스 위원회, 아르메니아 대체복무법을 개정안에 대한 견해, 2011년 12월 20일

### “대체” - 비징벌적 성격

군복무에 비해 지나치게 길거나 대체복무자를 차별하는 형태의 복무는 대체 처벌에 불과합니다.

“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.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”

-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, 그리스 대체복무에 대한 견해, 2008년

“대체복무의 조건은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하며, 여기에는 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, 사회단체에서 복무하도록 배정된 사람에게 기본 생계 소득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, 당사자의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포함된다.”

-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, 러시아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, CCPR/C/RUS/CO/6, 23항

### “복무” - 공익적 성격

대체복무는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고 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의 업무입니다.

“민간대체복무는 지역 사회에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,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.”

-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, 정민규 외 99인 대 대한민국, 개인청원 1642-1741/2007



■ 여전히 대체복무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나라들

